

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6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4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위탁사유

공설화장장및납골당 관리를 위탁하여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포함은 물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
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위탁코자함

2. 주요골자

-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.
-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마련
-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및 시설운영능력,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이 있는 개인또는 법인, 단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함.
- 민간위탁 학술용역결과(원가계산)에 의거 예정가격작성하여 입찰또는 수의계약
-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위탁비용지급등 위탁조건 명시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(사무의 위임)
-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-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(위탁관리)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

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.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.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.

□ 법적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(사무의 위임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조사.검사.검정.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.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.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(위탁관리)

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○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3조 제4조 (작용범위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)

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군수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.검사.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나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

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안

1. 위탁재산내역

시설명	기능	소재지	시설규모	비고
공설화장장	화장	고성군상리면자 운리85-1	건축면적:102m ² 휴게실: 40m ² 화장로: 2기	
공설납골당	유골봉안	"	건축면적:224.77m ² (연면적482.19m ²) 봉안능력:3,590기	

2.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3년

3. 수탁자선정

가.관련법규(위탁근거)

-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
- 고성군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- 고성군 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

나.수탁자의자격(요건)

-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능력과
재력이 있고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
- 5년이상 화장장 또는 납골당 운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개인

다.선정기준

- 수탁사무에 필요한 시설운영 능력
- 화장장,납골당 관련시설 운영경험 또는 근무경력에 의한
책임능력,공신력,전문성 및 사무처리능력
- 기타 운영의 실현성, 전문성

라.선정방법

-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민간위탁학술용역결과에 의거
예정가격(위탁비용)작성 하여 최저가격입찰 또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

마. 위탁조건

- 위탁시설물 무상사용

- 위탁비용 월별로 지급

*민간위탁 학술용역 결과에 의거 입찰 또는 수의 계약한 금액

바. 위·수탁 협약체결

- 위탁운영시설및사업.위탁기간등 명시

- 관리 및 운영방법.위탁조건

- 해약의요건.수탁재산의반환.작원의신분보장

사. 향후 위탁추진일정

- 수탁자선정 : 2001년상반기

- 위·수탁협약체결 : 2001년상반기

- 운영인계 : 2001년상반기